

대출거래약정서 변경 안내

대출거래약정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 내용

○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용_ 개별담보거래, 개별신용거래)

현 행	변 경	비 고
제5조 (중도상환)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되며, 중도상환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제5조 (중도상환)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 x 해당기간 적용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합니다. 1. 잔존일수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서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3. 대출개시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되는 일을 약정기일로 합니다.	대출 잔존일수를 감안한 일별 체감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법 변경

○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용_ 한도담보거래)

현 행	변 경	비 고
제5조(중도한도해지)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③ 중도한도해지수수료는 중도한도해지 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중도한도해지수수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되며, 중도한도해지 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한도해지하는 대출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중도한도해지)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③ 중도한도해지수수료는 중도한도해지금액 x 해당기간 적용 중도한도해지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 으로 합니다. 1. 잔존일수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서 중도한도해지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3. 대출개시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되는 일을 약정기일로 합니다.	대출 잔존일수를 감안한 일별 체감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법 변경

□ 시행일 : 2011. 12. 30.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HSBC 은행